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을 공고합니다. 많은 참여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행기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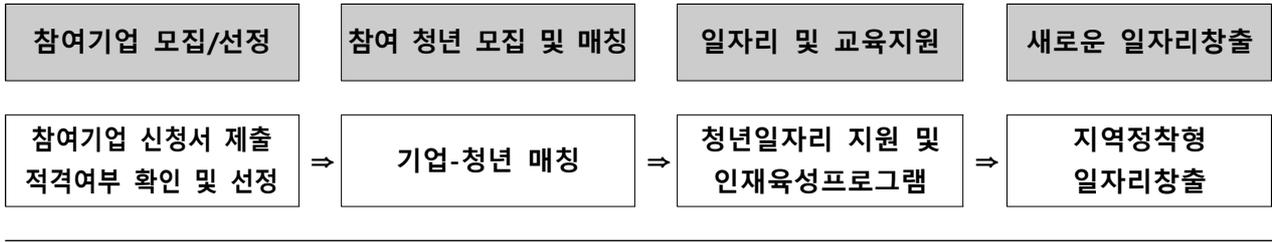
### 1

## 사업개요

### □ 개 요

- 사업명: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세부사업: 지역특화 청년 MICE-IT 전문인력 육성사업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접수기간: 2023.03.17.(금) ~ 2023.03.23(목) 18:00 까지
- 사업기간: (지역혁신형) 약정개시일로부터 2년 예산 범위내, 2년 종료 후 계속 고용 청년에 대해 1년 인센티브 직접 지원
- \* 지원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 의거 변경 가능
- 지원규모: 4명(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지원인원 제외)의 50% 범위)  
※ 서류 적격 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및 주민등록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신규 직원 채용시 1인당 인건비 (180만원 지원)

□ 추진전략 및 프로세스



**2 신청자격 및 기준(기업)**

-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기업 모집 분야 (지역혁신형)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 중 아래의 해당되는 기업

기업 모집 분야 및 세부사업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	MICE 산업인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 및 행사 운영 (국제회의/세미나/전시운영/박람회/이벤트/관광/마케팅 등)	관광 및 MICE (표준산업분류표참조)

-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연기준 2,400만원 이상( '23년 최저임금기준)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
  - ※ 급여 지급내역 확인 후 충족 시 지원하며,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 취소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ex. 전문컨설팅)
- 사업수행기관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3

## 지원자격 및 기준(청년)

---

### □ 지원자격 및 기준

- 연령기준: 만 18 ~ 39세(1983. 1. 1. ~ 2005. 12. 31출생자) 청년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취업이력이 있는 미취업자: 사업신청일 기준 **14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자  
(단, 비자발적 퇴사자, 타지역 퇴사자, 사업등록 폐업자는 실업기간 관계없이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에 준하여 참여)
  -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실업기간 관계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 자
-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4

## 참여자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직자에 한함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원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주 부담)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5

## 참여제한 기업 및 청년

---

### □ 기 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이 있었거나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
- 유형간('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

## □ 청 년

-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만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자, 참여일 기준 취업상태에 있는 자(단,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년 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자
-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선발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6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기업 인건비 지원 : 약정 개시일로부터 2년 범위내  
(지역혁신형) 약정개시일로부터 2년 범위내  
: 직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 이상(월 180만원지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지급  
※ 기업 부담분 4대보험은 기업부담  
- 읍·면 지역, 서귀포시 동지역(타지역 거주자에 한함) 기업 취업자 교통비 월 10만원 범위내 지원  
- 참여자 교육(직무, 심화, 네트워크), 기업컨설팅 등 지원

## 7

## 신청 및 접수(기업)

- 신청·접수 기간: **2023. 03. 17.(금) ~ 2023. 03. 23.(목) 18:00**  
※ 신청인원 부족시 사업 수행기관 수시 채용 절차 진행 예정
  - 지원인원: 사업장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지원인원 제외)의 50% 범위  
※ 참여기업의 수, 참여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에서 기업에 배정  
- 사업참여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이 취소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03.17.(금) ~ 2023.03.23(목) 18:00 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제출  
- 양식교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홈페이지(<http://www.iccjeju.co.kr>) 양식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신청서 제출 (1개의 PDF 파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사업명	문의처	신청방법
제주지역특화 MICE·관광기업 청년 인재 취업 지원사업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064)735-1045	방문, 이메일 접수 liser5170@iccjeju.co.kr

- 담당자: 마이스사업실 이슬 주임 Tel. 064)735-1045 (liser5170@iccjeju.co.kr)

## □ 제출서류

1. 참가 신청서(기업용)	1부	서식1	필수
1-1 참여기업(단체용) 소개서 1부.	1부	서식2	
2. 참여 기업 확인서 1부.	1부	서식3	
3. 신청 기업 정보	1부	서식5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7.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내역서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도탈서비스 발급) ※ 사업장명 자필로 기입 후 제출			
8.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사본)			
9.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필요시
10. 기업 소개 자료(필요시)	1부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1) \*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내역서 발급방법

사업장로그인-> 보험 가입 정보조회-> 근로자고용정보 현황조회(20103)->관리번호 기입  
보험구분을 고용으로 체크 하여 조회-> 고용종료일을 직전 3개월로 체크-> 조회화면 출력

## □ 선정 및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평가 및 결과통보	기업-청년 매칭	협약 및 지원
신청기업 → ICC JEJU	ICC JEJU → 신청기업	선정기업 - 청년	기업-ICCJEJU-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신청서(기업용), 관련서류 등 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서류 검토</li> <li>기업선정 및 기업별 청년 구직자 수 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기업과 청년과의 매칭</li> <li>매칭결과 통보 및 서류 제출(청년용) (기업→ICCJEJ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 및 지원</li> </ul>

※ 기업 및 청년 구직자 신청전 채용된 청년에 경우 지원 및 소급 적용 불가

※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구직 신청 청년만 참여 가능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임금 수준, 지속적 고용창출 계획 등
- 결과 통보: 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 □ 선정방법 및 항목

## ○ 제출서류 사전 검토

- 신청자격 부합성, 지원제외 대상 등 제출서류 검토

## ○ 평가방법: 서류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사업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
-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로 분류

##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내용		착안사항	배점
기업비전 및 활동 현황 등(40)	기업 비전	기업의 비전과 본 사업 목적과 부합정도	20
	기업 활동 현황/계획	해당 기업이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	20
인력활용 및 지원 계획 (30)	인력활용 계획	해당 청년이 회사내의 업무 역할 및 비중	10
	지원 계획	청년들의 역량들을 배양하기 위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무 등	20
근로조건 등 복지혜택 (30)	근로조건	급여, 제수당,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15
	복지혜택	청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복지 혜택	15
<b>합 계</b>			<b>100</b>

## 10

##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 [부정수급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제주자치도와 참여기업간의 약정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 붙임 1 >

전략산업표준산업분류표

산업군	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세세부분류 업종명
관광 및 MICE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1210	유선통신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210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 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90191	공연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